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법률이 위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을 [별표 1]로 별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해양생태 정책의 운영실적 등으로 구체화함

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를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 심의 순으로 정함

다. 해양생물자원관 전문가 채용 자격 요건 간의 관계 구체화

고도의 전문적 지식·자격 습득이 실무경험에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학력·자격 취득 후 경력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규정(법제처 법령정비 사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소지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지자로서”를 “자격을 취득한 후”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제22조(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제26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태계의 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고,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시민 모니터링, 지역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들의 관심, 노력 등이 충분할 것
해양생태 정책의 운영실적	법 제28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이 뛰어날 것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해양자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클 것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과의 연계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과 법 제9조의2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정책의 연관성이 높을 것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u>소지자로서</u>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u>종사한</u> <u>자</u>	2. ----- ----- <u>자격을 취득한</u> <u>후</u> ----- <u>종사한</u> <u>사람</u>
3. 해양생물자원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u>소지자로서</u>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u>자</u>	3. ----- ----- <u>자격을 취득한 후</u> ----- <u>종사한 사</u> <u>람</u>
<신 설>	제22조(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

<u>제22조</u> (생 략)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생 략)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 계수는 <u>별표 1과</u> 같다. ③·④ (생 략)	<u>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u> <u>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u>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u> 2.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u> 3. 「<u>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u>」 제7조에 따른 <u>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u>의 심의 <u>제22조의2</u>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별표 1의2와</u> --.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연 락 처	(044) 202 - 5313